

의안번호	2218764
의 퇴 인	김태선의원
회 답 일	2026.5.13.
추계번호	26B2450

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적용대상)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관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(제12조의2 ¹⁾ 는 제외한다)을 적용하지 아니함(제2항) 1.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2.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3. 그 밖에 임시적 기상관측 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	의무규정
2	안 제26조의2(업무의 위탁) 신설	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(제1항)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는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상측기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3조(적용대상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6조의2(업무의 위탁) 신설	—	·미대상 -기상청에 따르면,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대행기관 관련 업무는 현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되어 수행되고 있으며, 「기상법」 제44조 ²⁾ 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상측기 등의 장비도 무상으로 대여되고 있음

1) 제12조의2(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) ①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제작 또는 수입 전에 해당 기상측기의 구조·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상측기로서 기상청장이 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기상측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(이하 “형식승인”이라 한다)을 받은 자는 그 승인을 받은 내용 중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상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형식승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(이하 “변경승인”이라 한다)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한 내용의 표시를 기상측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.

④ 관측기관은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기상측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형식승인·변경승인의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2) 제44조(권한의 위임 등) ①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

			-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관련 업무는 계속하여 한 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되어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며, 기상청의 지원 수준 및 범위에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 이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--	--	--	--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교육 또는 연구 및 국방 등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에 대하여 관측기관이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관측기의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,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관측기 구매 또는 교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기상청에 따르면, 현재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AWS(Automatic Weather System), 강수량계, 대기환경측정용 기상관측 장비 등 총 5,304개의 기상관측기를 사용 중임 (참고자료 참조)
 - 참고로, 기상청에 따르면 위 5,304개의 기상관측기에는 형식승인을 받은 관측기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관측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, 미승인 관측기 현황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

[표 1] 기상관측장비 현황 (2025년 12월 기준)

(단위: 개소)

구 분	AWS	강수량계	대기환경측정용 기상관측장비	기타 (적설계, 풍향·풍속계 등)	합계
국가기관	1,391	524	107	15	2,037
지방자치단체	474	1,639	599	157	2,896
공공기관	80	305	0	13	398
합계	1,945	2,468	706	185	5,304

자료: 기상청

- 개정안이 시행되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관측기를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관측기로 교체할 경우, 관측기 교체 비용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

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·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상측기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수 있음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관측기의 종류·수량 및 교체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기상관측장비 현황

(자료: 기상청)

(단위: 개소)

구 분	AWS (Automatic Weather System)	강수량계	대기환경측정용 기상관측장비*	기타 (적설계, 풍향·풍속계 등)	합계
국가기관(5)	1,391	524	107	15	2,037
기상청	651	97	—	15	763
환경부	—	427	107	—	534
국도교통부	11	—	—	—	11
농촌진흥청	218	—	—	—	218
산림청	511	—	—	—	511
지방자치단체(17) *시군구 포함	474	1,639	599	157	2,869
서울특별시	—	124	40	—	164
부산광역시	16	16	32	—	64
대구광역시	1	49	26	—	76
인천광역시	6	33	33	—	72
광주광역시	—	14	13	—	27
대전광역시	2	11	15	—	28
울산광역시	—	25	22	20	67
세종특별자치시	1	13	6	—	20
경기도	152	193	122	52	519
강원특별자치도	—	39	27	—	66
충청북도	1	150	32	2	185
충청남도	10	184	44	—	238
전북특별자치도	45	141	44	1	231
전라남도	5	261	41	1	308
경상북도	—	273	48	31	352
경상남도	217	45	42	23	327
제주특별자치도	18	68	12	27	125
공공기관(6)	80	305	0	13	398
국립공원공단	72	82	—	1	155
한국도로공사	2	—	—	3	5
한국수력원자력	5	30	—	—	35
한국수자원공사	—	193	—	—	193
한국원자력환경공단	1	—	—	—	1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	—	—	—	9	9
합 계	1,945	2,468	706	185	5,304